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2037-000003-14



카카오톡 1:1상담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K O R E A F A I R T R A D E M E D I A T I O N A G E N C Y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유의사항

- ① 이 책자는 2019. 7. 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향후 법률과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이 책자에 나온 내용이 개정된 법률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 사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고자료이고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결과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결과' 등을 보장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6
----------------------------------	---

상세 내용

용어 정의 및 약칭 설명	10
---------------	----

가맹계약 상담 단계	11
------------	----

가맹계약 체결 단계	17
------------	----

가맹점 운영 단계	24
-----------	----

가맹계약 종료 단계	28
------------	----

조정원 분쟁조정제도 및 상담 안내	29
--------------------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The logo consists of a central white hexagon with a thin white border. Inside the hexagon, the text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is written in a bold, sans-serif font. The words "KOREA" and "FAIR" are in blue, while "TRADE", "MEDIATION", and "AGENCY" are in white. A horizontal white line passes through the center of the hexagon, extending to the left and right edges of the page. On the far left edge, there is a vertical teal bar.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 리스트	확인
<p>가맹계약 상담 단계</p> <p>▶ 상세 내용은 11쪽 확인</p>	<p>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포 예정지 인근의 '상권·경쟁·입지·수익' 분석을 해보셨습니까?</p> <p>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받으셨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가맹계약 체결 단계</p> <p>▶ 상세 내용은 17쪽 확인</p>	<p>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제공받고 14일*이 지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p><small>* 예시: 가맹본부로부터 1월1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면 1월16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능</small></p> <p>가맹본부가 상가를 직접 임차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가맹본부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p> <p>'일정한 명목*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바로 지급하면 안 되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치제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p><small>* 예시: ① 가입비, 교육비, 계약금 등, ② 상품 보증금 등</small></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p>

구분	체크 리스트	확인
<p>가맹계약 체결 단계 ▶ 상세 내용은 17쪽 확인</p>	<p>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p>*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 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p>	<input type="checkbox"/>
<p>가맹점 운영 단계 ▶ 상세 내용은 24쪽 확인</p>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p>* 예시: ①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원재료를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것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p>	<input type="checkbox"/>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input type="checkbox"/>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을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p>* 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요구 가능</p>	<input type="checkbox"/>
<p>가맹계약 종료 단계 ▶ 상세 내용은 28쪽 확인</p>	<p>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input type="checkbox"/>
<p>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상세 내용은 29쪽 확인</p>	<p>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본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조정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p>	<input type="checkbox"/>

The logo consists of a central white hexagon with a thin white border. Inside the hexagon, the text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is written in a bold, sans-serif font. The words "KOREA" and "FAIR" are in blue, while "TRADE", "MEDIATION", and "AGENCY" are in white. A horizontal white line passes through the center of the hexagon, extending to the left and right edges of the page. On the far left edge, there is a vertical teal bar.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상세 내용

용어 정의 및 약칭 설명

가맹계약 상담 단계

가맹계약 체결 단계

가맹점 운영 단계

가맹계약 종료 단계

조정원 분쟁조정제도 및 상담 안내

용어 정의 및 약칭 설명



◆ 용어 정의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가맹사업은 통상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란?**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자 / 가맹희망자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는 자 /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에 관계없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을 의미합니다.

◆ 약칭 설명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공 정 위
한 국 공 정 거 래 조 정 원	→	조 정 원
가 맹 사 업 거 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	가 맹 사 업 법
가 맹 사 업 거 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가 맹 사 업 법 시 행 령

※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링크: <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맹계약 상담 단계



- ◆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사·도지사에게 등록하였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각종 가맹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링크 ☞ <http://franchise.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소개	정보공개서	가맹희망플러스	알림마당	피해구제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 통계정보 가맹사업 주요용어 관련 기관 소개 관련 제도 소개	정보공개서 열람	정보공개서 비교정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정보 상권정보시스템 정보	공지사항 보도자료 발간물 모음 법령 및 서식자료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 신청유형 주요 분쟁조정 사례 피해구제절차 질의응답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정보공개서란?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이므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등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참고) 정보공개서 주요 확인사항

I.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 최근 3개년 동안 가맹본부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확인하시어 **가맹본부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I.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 됐는지, 가맹본부가 직접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 동안 가맹점사업자 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맹점사업자 변동 사유가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중 주로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사업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알려준 예상 매출액과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II.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패소 확정판결과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 어떠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원·부재료 등을 반드시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등을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대형마트 등을 통해 공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의 계약종료 이후, 그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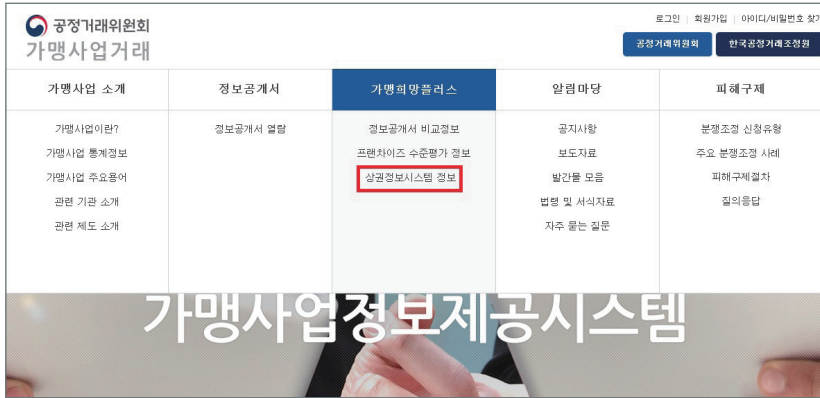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 가맹점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 인·허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점포 개설 위치의 상권 현황과 경쟁 정도, 입지 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정보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권정보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직영점 매출액 포함)입니다.

•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그 가맹본부와 거래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아 그 내용과 제공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 가맹희망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① 정보공개서 제공받았다는 사실, 일시와 장소, ②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 가맹희망자의 서명란, ④ 가맹본부의 서명란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①~③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

- 정보통신망에 게시(가맹희망자가 읽어 본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전자우편으로 송부(발송시간·수신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를 자필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 제공일시보다 이전 일시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난 후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월1일에 제공받았다면, 1월16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 가능

◆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문서가 아닌 **대화, 전화통화 등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녹취록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② 가맹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 (참고)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단계



◆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준으로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받으셨습니까?

* 가맹본부로부터 1월1일에 가맹계약서를 받았다면 1월16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능

-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

-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 조건 등을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가 임차한 상가**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게 될 경우,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전대차(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등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것)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건물주)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가맹본부'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상가에서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은 명목의 가맹금(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치가맹금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가이며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규정된 가맹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규정된 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성격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서 규정한 ‘**가맹금 예치제도란?**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둠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때 자신의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 가맹본부에 문제가 생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외에도, 가맹본부가 ‘농협·수협 등의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보험회사 등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맹희망자가 관심을 가진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중 어느 하나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1) 가맹금 예치제도 이용 순서*

* 세부 내용과 양식 등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운영 중인 가맹금 예치제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 (가맹점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 호 (영업표지)		
	성 명 (대표자)		
	주 소 (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양식 출처: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③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계좌 예금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의 명의입니다.(금융기관장 또는 지점장)

** 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가서 입금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가 있어야만 예치가맹금 입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금융기관은 예치가맹금 입금이 확인되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예치증서를 제공합니다.

가맹금 예치증서			
예치번호			
예치신청인 (가맹점명)			
수령인 (영업표지)			
예치기관명		계좌번호	
예치금액	₩	(금 원 정)	
예치이율	연 %	관리수수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예치기관의 장(지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left: 20px;"> 인 </div> </div>			

* 양식 출처: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6호 서식

⑤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9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예치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이용 순서*

* 세부 내용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①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본부는 그 가맹계약을 보험회사로 보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 즉, 보험계약은 가맹희망자 별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② 가맹본부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립니다.

③ 가맹희망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에서 '피보험자 증권관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실제로 가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인 가맹희망자를 의미하며, 보험료 영수증에 기재된 '사서함 번호'와 '증권번호'를 기재하시면 증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가맹희망자는 증권 발급내용에 적힌 '가맹사업내용*' 및 '보험가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 영업표지, 예치가맹금 액수, 가맹계약 체결일 등

** 보험이 보증하는 범위, 보험가입액 등

⑤ 증권 발급내용을 확인한 이후,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③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가맹사업의 중단일은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함.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 요구 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요구하는 자의 주소·성명
- ②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 ③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 ⑤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 ⑥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그 날짜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표에 기재된 '가맹금 반환 요구서면(예시)'를 참고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가맹금 반환 요구 서면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인(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성명) (주소) 수신인(가맹본부) (성명) (주소)
제목: 가맹금 반환 요구
1. 발신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2019년 1월 11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19년 4월 3일 이 문서를 통해 수신인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2.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정공개서를 제공한 날(2019년 1월 1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2019년 1월 11일 발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13일 발신인으로부터 가맹금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2.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19년 1월 5일 예상 매출액이 월 1천만 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발신인은 그 정보를 신뢰하여 수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월 5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3. 수신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문서가 도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신인의 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로 가맹금 A원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운영 단계



- ◆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구조적인 지위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능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 ◆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과 같고, 세부적인 유형 등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원·부재료 등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상품, 원·부재료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그 상품이나 원·부재료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등의 동일성 유지'가 곤란하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심야 영업시간의 가맹점 매출이 저조함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사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등

◆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집행 내역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는, 가맹점사업자 스스로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만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여러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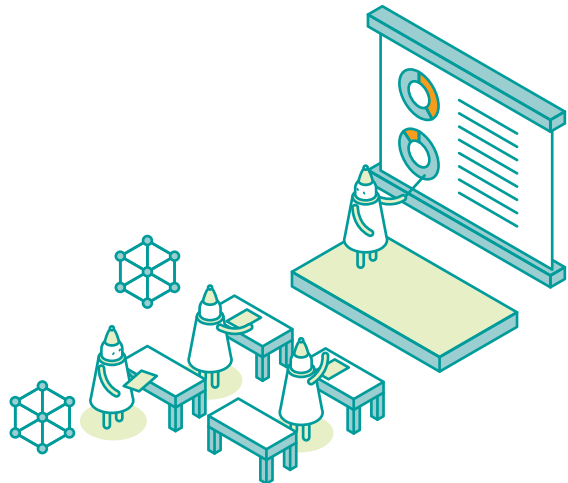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에 반하는 행위나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 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의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만약 가맹본부가 위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단, 가맹점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 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면허 취득에 관한 사항 ② 판매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③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정기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종료 단계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을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 ◆ 단,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총 열 가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5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8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0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원 분쟁조정제도 및 상담 안내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거래하던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입니다.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2008년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정처리기한 60일, 당사자 동의 시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 분쟁조정제도 상담안내

- 분쟁조정 상담센터: ☎1588-1490
- 상담시간: 평일 09:00~19:00
- 이 책자 표지에 있는 QR 코드를 이용하면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제도 이용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이용

* 홈페이지 링크 ⇨ <https://fairnet.kofair.or.kr>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발행일** 2019년 9월
- 발행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발행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동권
- 기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장 이윤기
- 집필참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가맹거래팀장 허지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가맹거래팀 조사관 박성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가맹거래팀 조사관 임연수
- 누리집** <http://www.kofair.or.kr>
-

※ 이 책자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9791188688104
ISBN 979-11-88688-10-4